

제2차 산업경제위원회
2009.07.14 (화) 16:00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송은섭 의원 외 24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09년 7월 1일
- 회부일자 : 2009년 7월 8일

3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상 육성된 품종을 등록하고 이를 공급함으로써 직무육성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, 조례 제정으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직무육성자는 도지사에게 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의무화(안 제3조)
- 충청북도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(안 제4조)
- 도지사의 품종보호출원 의무 규정(안 제5조)
- 품종보호출원이 인정된 경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과 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규정(안 제6조, 안 제7조)

-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과 이에 관한 처리사항 명기(안 제8조~안 제13조)
- 등록보상금, 처분보상금 및 각종 보상금에 대한 지급규정(안 제14조~안 제16조)
- 직무육성품종의 장려·품종보호권 등의 처분 등을 위한 충청북도종자위원회 설치와 기능 규정(안 제18조~안 제21조)
- 품종보호출원중인 품종에 대한 비밀누설, 도용금지 등(안 제23조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안’은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로, 도내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직무상 육성된 품종을 등록하고 지원함으로써 직무육성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, 이를 통해 도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함.
- 다만, 조례 시행에 따른 각종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예산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.